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회의장에 대한 탄핵소추제도 도입〉

■ 박성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951호)

2025. 7.

국 회 운 영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 상 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성민 · 구자근 · 강선영 · 김대식 · 박준태 · 이현승
최보운 · 서일준 · 박성훈 · 엄태영 · 김기현 의원(11인)

2. 제 안 일 : 2025. 4. 18.

3. 회 부 일 : 2025. 4. 21.

※ 의안번호 : 995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국회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당적(黨籍)을 가질 수 없고, 국회의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당적을 이탈할 당시 소속 정당으로 복귀함.

그런데 국회의장으로 당선된 국회의원이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적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중립성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음에도 국회의장의 당적 미이탈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의장으로 당선된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지게 된 경우 또는 당적 이탈을 하지 않는 등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민주적·
효율적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국회의장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하고, 국회의장으로 당선된 의원이 당적 이탈을 하지 아니하거나 정치적 중립 준수의 의무를 위반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0조의2(의장의 <u>당적 보유 금지</u> <u>지</u>) ① · ② (생략) <u><신설></u> <u><신설></u>	제20조의2(의장의 <u>의무 및 탄핵</u>)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의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u>정치적 중립을 준수하여야 한다.</u> ④ 국회는 의장이 제1항 본문에 <u>따른 당적 이탈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등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u>

현행법 제20조의2¹⁾는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1) 「국회법」 제20조의2(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①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黨籍)을 가질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47조에 따른 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의원 임기만료일 90일 전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당적을 이탈한 의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당적을 이탈할 당시의 소속 정당으로 복귀한다.

날부터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黨籍)을 가질 수 없도록 하고,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47조²⁾에 따른 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을 받으려는 경우 의원 임기만료일 90일 전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도록 함. 또한, 당적을 이탈한 의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당적을 이탈할 당시의 소속 정당으로 복귀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국회법³⁾에 따라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하는 의장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의장이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정운영에 초당적으로 임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됨⁴⁾.

개정안은 국회법에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 준수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국회의장이 당적 이탈을 하지 아니하거나 정치적 중립 준수 의무를 위반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이행을 보다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2) 「공직선거법」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①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 범위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이하 “정당추천후보자”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의 경우에는 그 정수 범위를 초과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② 정당이 제1항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③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군지역을 제외하며, 자치구의 일부지역이 다른 자치구 또는 군지역과 합하여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그 자치구의 일부지역도 제외한다)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3) 「국회법」 제10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4) 국회사무처, 「국회법해설」, p.86.

다만, 탄핵소추제도는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 곤란한 행정부의 고위직 공무원이나 법관 등과 같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이를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절차임(헌재 1996.2.29. 93헌마186⁵⁾).

따라서 국회가 스스로 선출⁶⁾한 국회의 대표자인 국회의장을 탄핵소추의 대상으로 규정하려는 개정안은 이러한 탄핵소추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정쟁과 갈등을 유발할 우려⁷⁾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참고로, 주요국 의회의 경우에도 국회의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제도화하고 있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움⁸⁾.

문 의 처
02)6788-5014

5) 헌법재판소 지능형통합검색(<https://isearch.ccourt.go.kr/view.do>) 참조

6) 「국회법」 제15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7) “국회의장은 통상 제1당에서 선출되는데, 역대 거의 대부분의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촉구결의안이 제출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회의장에 대한 탄핵소추제도가 오히려 원내정당간 갈등을 더욱 심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회답: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관련, 2025.5.8.)

8) “다만, 미국 연방의회에서 2023년 10월 3일에 역사상 최초로 케빈 매카시(Kevin McCarthy) 제118대 하원 의장이 해임되었는데, 이는 탄핵소추의 방식이 아니라 하원의장에 대한 해임결의안(resolution causing a vacancy in the Office of Speaker)이 하원에서 가결된 결과였음. 하원의장의 해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하원선례집인 『제퍼슨 매뉴얼』(Jefferson’s Manual)에 따르면 “하원의장은 하원의 의사에 따라 해임될 수 있고, 임시의장이 지명된다.”(『제퍼슨 매뉴얼』 제9장제315조)고 밝히고 있음. 당시 공화당이 자신들이 선출한 매카시 의장에 대한 해임안을 제출한 계기는 2024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였음. 공화당 내 강경파 의원들은 정부의 재정적자 감축과 우크라이나 지원 반대 등을 주장했는데, 매카시 의장이 제안한 임시예산안이 하원을 통과하자 강경파 의원들은 매카시 의장이 민주당과 야합했다고 의장해임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함”(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회답: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관련, 2025.5.8.)